
Policy and Law Report _Vol.120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1.17 ~ 2022.1.23) -

January 24,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과학 기술정보 통신부	•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발표 정부는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메타버스가 가져올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발표하였으며, 본 전략은 디지털 뉴딜 2.0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립한 첫 번째 종합대책임 비전 디지털 신대륙, 메타버스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목표 2026 글로벌 메타버스 선점 메타버스 전문가 양성 메타버스 공급기업 육성 메타버스 모범사례 발굴 추진 전략 신대륙 발견: 세계적 수준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도전하겠습니다! 신대륙 정착: 메타버스 시대에 활약할 주인공을 키우겠습니다! 신대륙 성장: 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하는 전문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신대륙 번영: 국민이 공감하는 모범적 메타버스 세상을 열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략1) 세계적 수준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도전 10대 분야 메타버스 플랫폼 발굴, 한류 및 지역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전략2) 메타버스 시대에 활약할 인재 양성 및 메타버스 활용·저변 확대 - 청년 메타버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메타버스 아카데미 개원('22, 180명), 메타버스 융합 전문대학원 신설('22, 2개), 메타버스 노마드 업무환경 지원 (전략3) 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하는 전문기업 육성 -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22, 1개소), K-메타버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전략4) 국민이 공감하는 모범적 메타버스 환경 조성 - 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 자율·최소규제·선제적 규제혁신 원칙 정립, 메타버스 사회혁신센터 운영 등 공동체 가치 실현 기여	2022-01-20

부처	내용	일시
고용 노동부	•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FAQ 배포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FAQ를 배포함. FAQ는 1/27(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의무이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을 Q&A 방식으로 정리한 것임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하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며, 경영책임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는 상시 근로자 수가 어떤 단위로 적용되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전담 조직의 설치 및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할 세부적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서도 상세히 제시함	2022-01-18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국토 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1.18. 시행) 시·도지사의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 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충실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역세권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하여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또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을 700퍼센트(법정 상한인 500퍼센트의 1.4배)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연녹지지역에 골재선별·파쇄 업종의 공장 건축을 허용하고,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소유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건폐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여 복합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이나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2022-01-18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1.21. 시행) 감정평가사의 업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에 대한 교육연수 제도를 도입하고, 감정평가 의뢰인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이 갖춰야 하는 손해배상능력 등에 대한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09호, 2021. 7. 20. 공포, 2022. 1.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공포·시행)이 개정됨 이에 따라, 교육연수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감정평가법인 등이 갖춰야 하는 손해배상능력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2022-01-21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식품 의약품 안전처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2.1.21. 시행) 신개발의료기기 및 희소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 재심사를 시판 후 조사로 변경하고, 의료기기의 제조·수입업자가 인체 삽입 의료기기 또는 유통과정 중 오염·변질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등을 제조·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을 봉합(封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8319호, 2021. 7. 20. 공포, 2022. 1. 21. 시행 및 법률 제18446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 이에 따라, 시판 후 조사의 절차·방법, 봉합 대상 의료기기의 봉합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프트웨어만으로 개발·제조되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 준수사항 등 (안 제15조, 안 별표 9 II 제5호 신설) -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의 준수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관할 것 등으로 정하고, 품질책임자 교육실시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교육수료증을 작성·발급하거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교육실시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② 시판 후 조사 계획서 승인 및 결과 보고 (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 시판 후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는 시판 후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기의 시판 3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판 후 조사결과 보고를 시판 후 조사계획 승인일부터 최초 1년까지는 6개월마다, 1년 이후에는 1년마다 하도록 함 ③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제조업의 시설기준 등 완화 (안 제26조제1항·제3항 및 별표 2 제1호가목) -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는 작업소, 시험실 등을 갖추지 않아도 제조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제조소 시설기준을 완화함 ④ 봉합 대상 의료기기 및 봉합 방법 마련 (안 제45조의4 신설) - 봉합 대상 의료기기를 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중 멸균 포장된 제품, 개봉하여 유통하는 경우에 오염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는 제품인 주사기, 주사침, 콘택트렌즈 등으로 정하고, 봉합 방법은 용기 또는 봉합을 뜯지 않고는 그 용기나 포장을 개봉할 수 없도록 하고 개봉한 후에는 쉽게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도록 함	2022-01-21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금융 위원회	• 「<u>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u>」(2022.1.18. 시행)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일인에 대한 신용보증 최고한도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받기 위한 경우에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한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이 재건축사업 등을 위한 조합에 참가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뿐 아니라 재건축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에게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이 전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2022-01-18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2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해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며 '22년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한편, 알뜰주유소 확대를 통한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한국거래소 전자결제망을 통해 구입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알뜰주유소 전환 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확대 (안 제7조) - 2022년 중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에 대해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알뜰주유소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0,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100분의 15,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100분의 10을 감면함 ②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안 제95조의2, 122조의3) - 2022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 등 12%)에서 12%(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 등 15%)로 한시적으로 상향함 ③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등 (안 제104조의25) - 한국거래소 전자결제망을 통해 구입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천분의 2에서 1천분의 3으로 상향하고,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④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적 확대 (안 제126조의2) - 2021년에 신설한 전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10%)를 1년 연장 적용하고, 이와 별도로 2022년에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2021년 대비 5%를 초과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10%)를 신설함 ※ 의견 제시기간 : 1/17(월)~2/8(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로 제출	2022-01-17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기획재정부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0년 11월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1년 12월 2일 국회 비준됨에 따라 같은 협정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등 (안 제4조제20호·제21호, 제7조제1항 제11호·제2항제15호, 제15조제19항, 별표 15의6, 별표 15의7, 별지 제24호의5서식 및 별지 제24호의6서식 신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같은 협정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하고,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하거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하며,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마련함 ② 원산지 조사방법 (안 제24조제20호 신설)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는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 또는 현지조사하거나, 수출국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함 ③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안 제30조제1항·제3항·제6항) -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수입물품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으로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은 제외)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용견품(商用見品)을 포함시킴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으로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을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의 범위에서 제외 (안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 의견 제시기간 : 1/21(금)~1/24(월)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로 제출	2022-01-21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국토 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검사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하고, 검사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051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는 세부 처분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자동차 검사 이행명령 미 이행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폐지 (안 제28조, 안 제64조의2, 안 제150조) –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검사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규정이 법률에서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폐지하려는 것임 ② 자동차 검사 이행명령 미 이행시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도입 (안 제63조의2, 안 제64조, 안 별지 제37호의2 서식, 안 별지 제38호 서식) –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검사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운행정지를 한다는 사전고지와 운행정지에 대한 이행사항 및 운행정지명령서에 운행정지 위반 시 처벌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의견 제시기간 : 1/18(화)~2/28(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	2022-01-18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2021년부터 신용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은행은 개인신용평가회사에서 평가한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하여 대출여부,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을 결정하고 있음 그런데 은행별 신용점수가 각각 다르고 이에 따라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이 다르게 산정되고 있어 금융소비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으며, 평가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모르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평점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음 이에 은행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하는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신용평가의 투명성과 금융소비자의 수용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30조의3 신설 등)	2022-01-18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등 12인)」 「예금자보호법」에서는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그 관련자 등에 대해 재산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조사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은닉재산이나 자금흐름을 찾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부실금융회사 등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가 손해배상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등을 “자금세탁행위”에 포함시키고, 이 같은 행위로 의심되는 금융거래정보나 관련자의 고액 현금거래정보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이 예금보험공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5호라목 신설 및 안 제10조)	2022-01-19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기획재정 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1인)」 최근 1인가구와 노인가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로 2019년 대비 47만 가구가 증가(8.0% 증가)하였음 그런데 높은 수준의 반려동물 의료비로 인해 반려동물을 양육하다가 병에 걸리면 유기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바, 국가적 차원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2021년 12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및 진료비용 게시 등 조항이 신설되어, 앞으로 동물 진료 과정과 진료비용 등에 대한 품질과 서비스 신뢰도가 높아질 것임 이에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함으로써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동물병원 진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안 제126조의2제2항제4호 신설 등)	2022-01-17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전기통신서비스별 요금한도를 초과한 경우 또는 국제전화 등 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요금이 부과될 경우에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를 하고 있음 그런데 이용자가 전화를 장기간 이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아 자신의 전화가 해지된 줄 알고 있다가 뒤늦게 요금을 인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와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화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1년 동안 이용자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발신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32조의2제1항제3호 신설)	2022-01-1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행정안전 위원회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설립하거나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 일부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내 산업의 집적효과가 큰 지식산업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감면율을 확대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되는 적용기간을 일정 기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율을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40으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60, 재산세의 100분의 40으로 각각 상향하고, 감면 적용 기한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58조의2)	2022-01-18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를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설립·지원·분양·입주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 지식산업센터 법률 위반사항을 조사한 결과 지식산업센터에 모피백화점, 음식점 등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과 무관한 사업자가 입주하여 영업을 해온 것이 다수 적발되었고,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 및 세금감면 혜택을 악용하여 가상통화 채굴행위가 이루어지는 등 불법 영업 행위가 성행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에 대한 관리·감독권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불법 영업 행위 근절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가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해당 업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본래의 설립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자료 제출·보고를 요구하거나 조사·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8조의4제5항 신설)	2022-01-17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②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는 입주기업 현황을 정기적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안 제28조의6제4항 및 제55조제2항제7호의2 신설) ③ 입주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지식산업센터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안 제28조의7제3항 및 제55조제2항제7호의3 신설) ④ 누구든지 지식산업센터를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임대를 알선하거나 중개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안 제28조의7제4항 및 제53조제3호의2 신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요건을 따로 상세히 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음 다만,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업종을 시행령에서 전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어 일반 유흥 주점업 등 사행성이 짙은 사업을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바 있음 그런데 2021년 5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가 시행되고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등 가상자산이 자산의 한 종류로서 정당하게 인정받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도 벤처기업에 포함하여 가상자산 관련 산업이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2022-01-18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의원 등 11인)」 최근 대기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등의 폐배터리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참고로 환경부는 2020년 기준 275개, 2025년 기준 31,700개, 2030년 기준 107,500개의 전기자동차 등의 폐배터리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전기자동차 등의 폐배터리 안에 들어 있는 리튬이 물이나 공기에 닿으면 급격히 반응해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폐기물처럼 매립이나 소각이 불가능하므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이 필요함	2022-01-1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특히, 폐배터리의 성능이 70~80%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등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므로 폐배터리 재사용에 필요한 안전성검사 제도 도입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재사용전지”를 전기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동축전지(배터리)로 사용되었던 이차전지 등을 사용하여 재사용 목적으로 제조한 이차전지로 정의함 (안 제2조제18호 신설) ② “안전성검사”를 재사용전지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안전성검사기관이 확인하는 것으로 정의함 (안 제2조제19호 신설) ③ 재사용전지 제조업자에게 재사용전지에 대한 안전성검사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재사용전지에 안전성검사의 표시 및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이하 “안전성검사표시등”)를 하도록 함 (안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각각 신설) ④ 안전성검사표시등이 없는 재사용전지의 판매·사용 등을 금지함 (안 제38조의4 신설) ⑤ 재사용전지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수행하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7까지 각각 신설) ⑥ 사용후전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사용전지 제조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근거를 마련함 (안 제38조의8 및 제38조의9 각각 신설) ⑦ 그 밖에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재사용전지 제조업자 등에게 벌칙을 부과함 (안 제49조 및 제51조 등)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본회의	1/25(화)	제393회국회(임시회) 개회식 개최(예정)	
특별위	1/28(금) 10:00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	
상임위	1/26(수) 10: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현안질의 (법무부장관)	
국회사무처	1/28(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74호 발간	
국회도서관	1/24(월)	「최신정책정보·국내」 제93호 발간 - ‘코로나19 이후 고용재조정 및 거시경제적 영향’ 등 국내 정부 기관, 공공기관 및 싱크탱크 등 최신 주요정책, 현안정보 수록	
	1/25(화)	「현안, 외국에선?」 제28호 발간 - 최근 모병제 논의에 대응하여 미국의 모병 및 예비군 제도 소개	
	1/25(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82호 발간 - 영국의 국가안보투자법(2021)	
	1/25(화)	「현안입법 알리기」 발간 -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18세로 하향	
	1/27(목)	「국외 현안리포트」 발간 - 일본의 양성평등 교육의 현황과 과제	
예산정책처	1/27(목)	「NABO 경제·산업 동향 & 이슈」 1월호 발간 - 2022년 경제정책방향 점검과 시사점 - 환율이 설비투자세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입법조사처	1/26(수) 07:30	제13회 「NARS 시선과 논단」 개최 -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시대적 과제	ZOOM
	1/28(금) 14:00	「전문가 간담회」 - 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이행 - 홍연아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온라인

*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명단

교섭단체	위원명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김정호, 박재호, 이상헌, 전재수, 최인호, 김영배, 이용우, 양이원영
국 민 의 힘	서병수, 안병길, 이현승, 양금희, 유경준, 이주환, 조태용, 한무경
비 교 섭	최연숙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24(월) 14:00	「탄소중립시대의물관리 정책」 세미나 개최	변재일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외	의원회관 1세미나실
1/25(화) 10:00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윤영찬 의원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의원회관 1세미나실
1/25(화) 14:00	지속가능 농어촌, 청년 농림 수산 인력이 미래다	하영제 의원실	국회도서관 대강당
1/26(수) 10:00	폐기물 시멘트 성분표시 및 등급제 도입 토론회	노웅래, 강훈식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26(수) 10:00	정책 대전환을 위한 국가혁신 전략	서영교, 박수영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외	의원회관 2소회의실
1/27(목) 10:00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위헌, 대안 입법을 위한 긴급토론회	권인숙, 소병철 의원실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1] 지난 주 뉴스레터(제119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사무처	1/21(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73호 발간	
국회도서관	1/20(목)	「최신 정책정보」 발간 - 주요 외국 싱크탱크기관이 발간한 최신 정책보고서의 요약문과 외국의 주요 정책자료 중 최근 2년 이내의 번역리스트 수록	
입법조사처	1/19(목)	「외국 입법·정책 분석」 - 일본 공익통보자보호법 개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19(수) 10:00	2022 전력계통 포럼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망의 역할	김주영, 이광재 의원실, 전기신문	의원회관 대회의실
1/19(수) 14:00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특별강연 - 가상 디지털 플랫폼 X의 등장과 국가 핵심전략 기술	조응천, 조승래 의원실, 미래경제연구회 외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1/20(목) 10:00	메타버스진흥법 제정과 차기 정부의 역할 토론회 - 메타버스가 미래다!	김영식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1/21(금) 10:00	법체계 정합성의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정립 세미나	진선미, 김희곤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의원회관 1세미나실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 T. 02-316-4630 | E. dybaek@shinkim.com |
|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212 | E. hpak@shinkim.com |
| •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 T. 02-316-4432 | E. sbkim@shinkim.com |
| • 홍정아 (Claudia Hong)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487 | E. cahong@shinkim.com |
| • 방세희 소속변호사 | T. 02-316-1773 | E. shbang@shinkim.com |
| • 노지은 소속변호사 | T. 02-316-2573 | E. jeroh@shinkim.com |
| • 서예지 소속변호사 | T. 02-316-1787 | E. yjiseo@shinkim.com |
| • 나인선 소속변호사 | T. 02-316-1795 | E. isna@shinkim.com |
| • 문응필 소속변호사 | T. 02-316-4047 | E. epmoon@shinkim.com |
| • 최유리 소속변호사 | T. 02-316-1748 | E. yrchoe@shinkim.com |
| • 성재열 소속변호사 | T. 02-316-1777 | E. jysung@shinkim.com |
| • 조성환 소속변호사 | T. 02-316-2596 | E. suhcho@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